

중 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인공지능 관련 분쟁사건 심리 의견 발표

2026. 09. 16.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26년 9월 7일 중국에서 인공지능 관련 분쟁사건을 현행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되게 심리하기 위해 민법전·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민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총 5개 부분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국 최고 사법기관 최초의 인공지능 관련 재판규칙 문건인 <최고인민법원 인공지능 관련 분쟁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을 발표함.

○ 주요내용

첫째,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 심리의 지도사상과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며, 둘째, 법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침해행위를 규제함. 셋째,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며, 넷째, 심리 절차 규칙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위법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함.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심리 및 업무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보완함.

○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심리 기준 마련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서비스 유형, 산업의 특성, 학습데이터의 출처, 당사자의 참여 정도, 침해 방지 조치 및 수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개발자·제공자·사용자의 책임을 판단하도록 함. 비침해 항변을 하는 인공지능 개발자는 학습데이터 출처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인공지능 제공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는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함. 인공지능 사용자가 선행저작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생성했음에도 합리적 항변사유가 없고 권리자가 침해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함. 한편, 법에 따라 인공지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며, 인공지능 발명·창조 관련 특허의 허가 및 권리확인 행위를 법에 따라 규범화함. 또한 인공지능 기술 계약 이행과 관련된 위약책임을 신중하게 인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사용 행위를 규범화함.

■ 참고자료

최고인민법원 (最高人民法院)
- <https://mp.weixin.qq.com/s/1wwUS-nT6veViuSp47YKkw>